[서식 22] 도축검사증명서

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0. 4. 16.>

제 호

도축검사증명서

1. 가축의 종류:
2. 두수 및 이력번호(소·돼지·닭·오리만 해당합니다):
3. 중 량: 지육 kg, 내장 등 기타 kg
4. 작 업 장 명:
5. 검 인 번 호:
6. 도 축 일: 년 월 일
7. 도축 의뢰인: 주 소

   성 명
8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: [ ]여, [ ]부
9. 수입소의 경우

   - 수출국가명:

   -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: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: 폐기(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kg)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1조제1항·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사관 소 속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